

4-2 서비스 중단

4-2.1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계정 소유자 및/또는 거주자에게 이 정책을 통지하는 방법, 지불 계약 또는 대체 지불 일정을 얻는 방법,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체납 계정의 미납에 대한 주거용 수도 중단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는 수도 요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후 서비스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

이 정책은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인 상원 법안 998("SB998")의 준수를 규정합니다. SB998은 2018년 9월 28일에 승인되어 2020년 2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B998은 체납 계정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요건을 설명합니다.

4-2.2 연결이 끊긴 이유

- (a)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급수 시스템에 대한 모든 서비스 라인 또는 기타 연결을 끊고 급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교육구 또는 주 또는 카운티 보건 담당자가 고객 또는 교육구의 물 사용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한 상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 고객이 교육구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가 적절한 신청 없이 또는 허위 또는 사기 신청하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 고객이 교육구 시설을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간섭한 증거가 있습니다.
 - 조사 후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캘리포니아 수자원부 또는 교육구가 연결을 통해 공급된 물이 낭비되고 있거나 물의 사용 또는 사용 방법이 비합리적임을 발견한 경우;
 - 고객이 교육구에서 요청한 후에도 고객의 계량기를 편리하게 읽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 고객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육구에 부과되는 요금이나 요금에 대한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4-2.3 단선의 타이밍

- (a) 분리의 목적이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것이라면 사전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b) 상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주 고객의 경우, 서비스 연결을 끊기 최소 7일 전에 교육구는 전화나 우편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통지를 통해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 (c) 상각 계약, 대체 지불 일정 또는 연체 요금에 대한 지불 계획의 연기 또는 축소를 60일 이상 준수하지 않거나 상각 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현재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는 주거 고객의 경우, 대체 지불 일정, 또는 60일 이상의 연체 요금에 대한 지불 계획의 연기 또는 축소, 서비스 연결 해제 의사에 대한 최종

통지가 다음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된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

4-2.4 연결 해제 알림 언어

미납으로 인한 주거 서비스 중단 통지는 영어, 민법 섹션 1632에 나열된 언어 및 학군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최소 10%가 사용하는 기타 언어로 제공됩니다. 교육구의 서면 정책은 교육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5 연결 끊김 알림

- (a) 미납에 대한 주거 서비스 중단에 대한 교육구의 서면 정책(본 규정)과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미납에 대한 주거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된 옵션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또는 지불 감소, 미지급 잔액의 상각을 요청하는 절차, 고객이 미납에 대한 주거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옵션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고객이 청구서 검토 및 항소를 청원할 수 있는 공식 메커니즘.
- (b) 지불 연체 및 임박한 중단에 대한 서면 통지는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주지의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고객의 주소가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동산의 주소가 아닌 경우, 통지는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동산의 주소인 "점유자"로도 발송됩니다.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모두 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식으로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고객의 이름과 주소.
 - 연체 금액.
 - 주거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지불 또는 지불 준비가 필요한 날짜.
 - 연체료 납부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 청구서 검토 및 항소를 위한 청원 절차에 대한 설명.
 - 연체 주거 서비스 요금의 상각을 포함하여 고객이 연기, 축소 또는 대체 지불 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설명.
 - 수도 서비스가 꺼진 경우 재연결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 (c) 고객 또는 거주하는 성인과 전화로 연락할 수 없고 서면 통지가 우편을 통해 배달 불가로 반송된 경우,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 거주지를 방문하고 임박한 서비스 중단 통지를 남길 것입니다. 미납에 대한 주거 서비스 및 미납에 대한 주거 서비스 중단에 대한 도시 및 지역 사회 수도 시스템 정책.
- (d) 거주지의 성인이 교육구의 이용 가능한 항소 양식을 통해 수도 요금에 항소하는 경우 항소가 계류 중인 동안 주거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4-2.6 단선의 한계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미납으로 주거용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a) 고객 또는 고객의 세입자는 섹션의 하위 항목 (b)의 단락 (1)의 하위 항목 (A)에 정의된 용어 "일차 의료 제공자"의 인증을 교육구에 제출합니다. 복지 및 기관법 14088에 따르면 주거 서비스 중단은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 거주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 (b) 고객은 도시 및 지역 사회 상수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서 주거용 서비스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불할 수 없음을 입증합니다. 고객의 가구 구성원 중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생활보조금/주 수혜자가 있는 경우 고객은 도시 및 지역사회 수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서 주거용 서비스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추가 지불 프로그램 또는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또는 고객은 교육구가 제공한 양식을 통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임을 서면으로 선언합니다.
- (c) 고객은 모든 연체 요금 또는 상각 계약(12개월 이내)과 관련하여 섹션 116906의 하위 조항 (a)에 따라 제공된 서면 정책에 따라 지불 연기 또는 축소 계획을 체결할 의향이 있습니다. , 대체 지불 일정.
 - 교육구는 개별 사례의 상황에 따라 고객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긴 상환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d) 정책 섹션 4-2.5(a)~4-2.5(c)가 충족되는 경우 교육구는 고객에게 다음 옵션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합니다.
 - 미지급 잔액의 상각.
 - 대체 지불 일정에 참여.
 - 다른 요금 납부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용자된 미지급 잔액의 일부 또는 전체 감소.
 - 일시적인 지불 연기.
- (e) 교육구는 고객이 수행할 최상의 지불 옵션을 선택하고 해당 지불 옵션의 매개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2.7 수도 서비스의 재구축

- (a)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교육구는 해당 서비스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다시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체 요금과 수수료가 지불될 때까지 서비스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 (b) 가구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인 거주 고객(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생활 보조금/주정부 추가 지급 수혜자인 가구 구성원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또는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선언하는 경우 자동으로 다음 할인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보건 및 안전법(H&S Code) 섹션 116914(a)(1)에 따라 정상 작동 시간 동안 다시 연결하는 비용은 \$50 미만입니다(H&S Code 섹션 116914(a)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음). (1) 또는 교육구의 비용 할당 계획에 명시된 재연결의 실제 비용.

- 재접속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 변경에 따라 연간 조정됩니다.
- H&S 코드 섹션 116914(1)에 따라 교육구의 비운영 시간 동안 다시 연결하는 비용은 \$150(H&S 코드 섹션 116914(a)(1)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음) 또는 실제 비용 중 작은 쪽이 됩니다. 교육구의 비용 할당 계획에 명시된 대로 재연결.
 - 재접속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 변경에 따라 연간 조정됩니다.

4-2.8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련된 연결 해제

- 차단되기 전에 구역에 세입자가 거주지를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구역은 서면 통지를 통해 거주자에게 해당 계좌가 최소 10일 전에 연체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모든 선의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종료. 서면 통지는 거주자에게 연체 계좌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서비스가 청구될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추가로 알려야 합니다.
 - 관계가 통보되면 교육구는 제안된 종료 최소 7일 전에 종료를 통지합니다.
- 교육구는 각 거주자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수도 서비스를 설정하기 위한 기타 모든 교육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가구 주거용 부동산에서, 주거 거주자 중 한 명 이상이 계정에 대한 차후 요금에 대해 법적으로 기꺼이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질 수 있고 수도 서비스를 설정하기 위한 다른 모든 교육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동의하거나 물리적 지역의 규칙 및 요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종료하도록 지역구에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수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연체 계좌에 대한 미지불 금액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된 거주자가 기록에 있는 연체 계정 고객이 해당 주택의 임대인, 관리자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에는 임대 또는 임대 계약, 임대료 영수증,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부 문서 또는 민법 1962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2.9 연결 끊김 보고

- (a) 매년 지불 불능으로 인한 주거 서비스 중단 횟수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 (b) 이사회도 보고서를 받습니다.